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56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이해식・박상혁・박정현

신정훈 • 황명선 • 윤준병

서영석 • 민병덕 • 서영교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민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

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무기구) ① · ② (생	제27조(사무기구)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u>③</u> · <u>④</u> (생 략)	$\underline{4} \cdot \underline{5}$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